

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69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3월 29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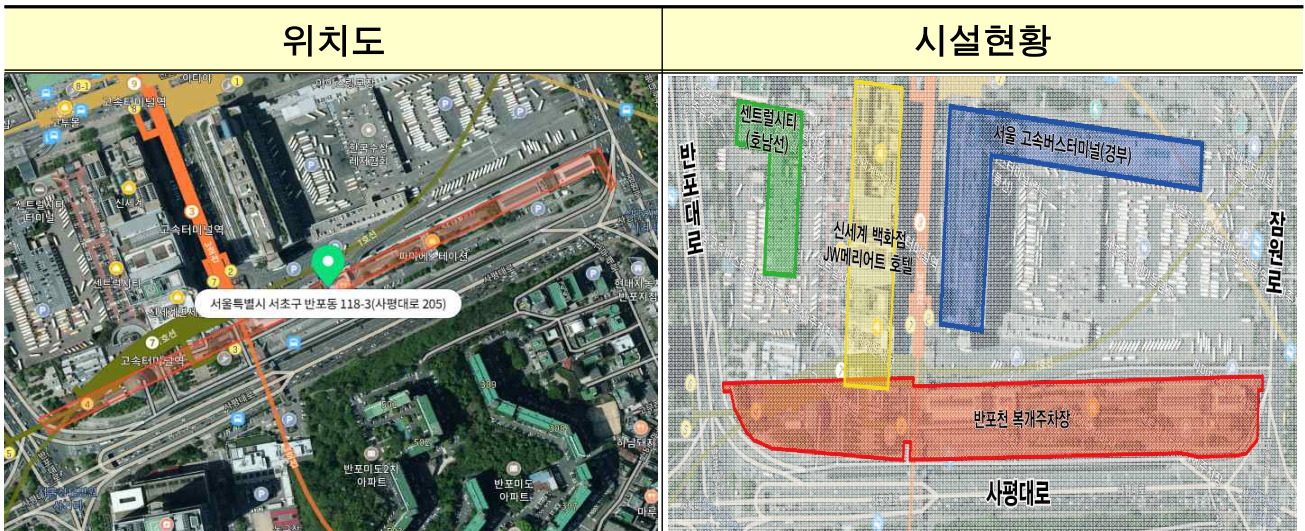
1. 제안이유

- 가. 무상사용기간 종료(2023.10.9.) 후 우리시로 반환되어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 대행하기로 결정된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제3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
- 나.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명 : 반포천 복개주차장 제3자 위탁(민간업체)
- 나. 위탁 추진개요
- 위탁기간 : '23. 10. 10. ~ '28. 10. 9.(5년)
 - 대상시설 : 반포천 복개주차장

주차장명	위 치	총면적 (m^2)	규 모	주차면수	부속시설 (점포)
반포천복개	서초구 반포동 118-3 외 7필지	83,218	B1~5층	1,181	56



다. 위탁 필요성

- 반포천 복개주차장 주변시설(신세계백화점, 호남·경부선 터미널)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인수 후에도 현 수준의 주차 및 부대시설 이용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함.
- 반포천 복개주차장 관련 용역 결과에 따라, 현 '운영형태'와 유사한 '관리위탁자'를 선정하여, 반포천 복개주차장을 효율적·전문적으로 운영코자 함.
 - ※ 관리이행계획 용역(서울연구원 공공투자센터, '20.7월) 및 활용구상안 마련 용역(공공개발기획단, '20.8월) 결과, 인수('23. 10.) 후 운영 방식은 공공위탁(공단 직영)이 아닌 '민간 관리위탁' 제안
- 공단의 운영 전문성 미흡 및 과대한 조직 확대 등 비효율성 방지

라. 추진방법 :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적격업체 선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9조

제19조(대행사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계약에 의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시의회"라 한다)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·경비·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⑥ ~ ⑦ 생략

○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10조

제10조(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) ①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(이하 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
2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
3.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
4. 전통시장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
5. 민자사업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·기부채납한자(단, 인근에 사업장을 영위 하는 경우에 한함)

② ~ ③ 생략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※ 작성자 :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강영호(☎ 2133 - 2375)